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입수한 기록  
또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 발효된 조나단 법  
(Jonathan's Law) 개정 내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신이 입수한 신고해야 하는 사건에 관한  
기록과 서류를 다음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
- 행동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
- 법 집행 기관(자격을 갖춘 사람이 범죄 행위라  
고 믿는 경우) 및/또는
- 자격을 갖춘 사람의 변호사

보다 자세한 정보 또는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조나단 법(Jonathan's Law)에 관한 정보는 뉴욕  
정신 건강법(NY Mental Hygiene Law) 제  
33.23조 및 제33.2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호법(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Act)(2012년 법 제501장)
- 발달장애인지원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OPWDD)) 시스템  
내에 있는 기록 및 서류 접근에 대한 추가  
요건은 14 뉴욕주 행정 규정(NY Codes, Rules,  
and Regulations), 제624.6조 및 제62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시스템 내에 있는 환자 기록 접근 및  
이 같은 기록의 재공개에 대한 추가 요건은 42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파트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지원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OPWDD))의 “사건  
확인 방법(Learning About Incidents)” 법내서  
에는 기록 접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내서는 발달장애인지원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웹사이트  
([www.opwdd.ny.gov/node/395](http://www.opwdd.ny.gov/node/39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지원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OPWDD))의 정보  
지원 전화번호는 1-866-946-9733 /  
TTY: 1-866-933-4889번이며 웹사이트는  
[www.opwdd.ny.gov](http://www.opwdd.ny.gov)입니다.
- 법무 센터 정보 및 의뢰 부서(Referral Unit)  
무료 전화는 1-800-624-4143(음성/스페인어  
/TTY)번이며, 이메일은  
[infoassistance@justicecenter.ny.gov](mailto:infoassistance@justicecenter.ny.gov)입니다.



# 조나단 법 (Jonathan's Law)

## 사건 통보 및 기록 접근:

개인, 부모 및  
법적 보호자를 위한 법내서



Andrew M. Cuomo, 주지사

## 소개

본 법내서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당사자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얻는 절차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법내서이며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조나단 법(Jonathan's La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법내서 마지막에 법내되어 있는 리소스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조나단 법(Jonathan's Law)이란?

조나단 법(Jonathan's Law)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특수 수용 시설은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미성년 또는 성인 환자의 법적 보호자 및 부모에게 이들과 관련된 사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같은 사건에 관련한 특정 서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이 법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 환자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 성인 환자의 부모, 법적 보호자,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로 성인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 법원에서 행위무능력자로 판결하지 않은 성인 환자

## 이 법은 어떤 시설에 적용됩니까?

다음 주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이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모든 시설은 조나단 법(Jonathan's Law)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지원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OPWDD))
- 정신건강부(Office of Mental Health(OMH))
-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 “사건”은 무엇이며

### “신고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 “사건”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건강 또는 법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부상으로 정의됩니다. 심각한 사건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건강, 법전 또는 법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정의됩니다.
- “신고 대상 사건”은 의무적 신고자가 NYC 장애인 보호 법무 센터(NYS 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Justice Center))에 보고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행위에는 학대, 방치 및 심각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 사건이 발생되면 누구에게 통보됩니까?

- 시설에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전화로, 사건의 초기 신고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의 건강 또는 법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부상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에서는 서면의 사건 보고서 사본을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시설에서는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과의 회의를 추천해야 합니다.

## 사건의 해결을 위해 취해진 조치는

### 누구에게 통보됩니까?

시설 책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취해진 조치(즉, 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사건의 초기 신고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서류가 있습니까?

조나단 법(Jonathan's Law)에서는 시설에서 학대, 방치 및 심각한 사건(신고해야 하는 사건)에 관한 혐의 내용과 조사 내용에 관한 기록과 서류를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 센터로 보고된 학대 또는 방치 사건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무 센터에서는 이를 수용

환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학대 및 방치 신고는 입증될 수도 있고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로 서면 요청 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공정 센터에 신고된 학대 또는 방치 사건 조사와 관련한 기록 및 서류를 조사 종결 후 21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받아볼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른 개인과 직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정보는 해당 개인이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 한 편집됩니다.

연방법 또는 규정에 따라 신고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이나 정보의 공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법에서는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OASAS)) 제공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록이나 정보를 해당 당사자(성인이든 미성년이든)의 특정 동의 없이 또는 연방법에 따른 법원 명령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고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 환자와 부모 또는 보호자 모두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록과 서류에 대한 요청은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건과 조사 기록에 대한 요청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제공자에게 해야 합니다.

법무 센터에서 학대 또는 방치(신고해야 하는 사건)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공정 센터는 제공자와 조율하여 조나단 법(Jonathan's Law) 및 장애인 보호법(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Act)에 따라 기록과 서류를 공개하게 됩니다.

## 기록은 언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서면 요청서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사건에 관한 기록과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조사 종결 후 21일 이내에 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